

KRIC 탄소전문가 그룹 세미나

파리협정 하 ODA 사업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연계방안 및 시사점 (2024. 1. 8.)

탄소정책기획팀 최 본 주임연구원

(bonn@kric.re.kr / 033-259-0135)



01 국제감축사업

① 정의

국제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 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그 밖에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② 추진 배경

구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채택, 2016년 발효)
목표	내용	·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 보다 최소 5% 이상 감축	·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 유지, 1.5°C까지 제한 노력
	설정 방식	· 하향식(Top-down) /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할당	· 상향식(Bottom-up)/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설정 기준	· 없음	· 진전의 원칙
범위		·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포괄
적용 시기		· 1차 공약기간: 2008년~2012년(발효) · 2차 공약기간: 2013년~2020년(미발효)	· 2021년 이후
감축 의무국가		·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주요 선진국)	· 모든 당사국(선진국 + 개도국)
구속성		· 1차 공약기간: 미달성량의 1.3배를 2차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 2차 공약기간: 교토의정서 개정안 미발효로 구속성 결여	· 비구속성
유연성 메커니즘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	· 제 6.2조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 · 제 6.4조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 · 제 6.8조 비시장 접근법(Non-Market Approach)

01 국제감축사업

③ 목표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436.6백만톤) 감축

→ 총 291백만톤 감축 필요 (국제감축 목표: 37.5백만톤)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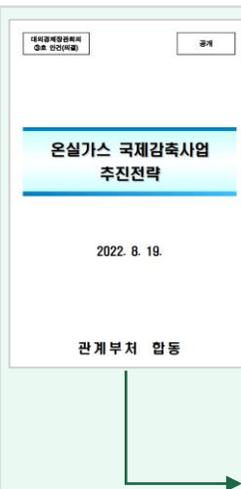
총 감축 목표량 (291백만톤)

국내(512백만톤 배출목표)		국외 등(75.4백만톤 감축목표)	
전환	145.9백만톤	흡수원	26.7백만톤
산업	230.7백만톤	국제감축	37.5백만톤
건물	35.0 백만톤	CCUS	11.2백만톤
수송	61.0백만톤		
농축산	18.0백만톤		
폐기물	9.1백만톤		
수소	8.4백만톤		
기타(달루 등)	3.9백만톤		

**서울시 10개면적
축구장 30만개 면적
태양광발전 설치시 가능**
(국내기준 연배출량기준)

* 참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4, 관계부처 합동)

④ 추진 전략



IV.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정책 목표

-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
-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신시장 참여 기회 확대**
-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에 부응하여 **양자협력 내실화**

추진 체계

- ◇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립
-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
- 플랫폼 내 협업·지식공유로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

정책 과제

①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체계 정비** 마무리
감축경로·사업소요 도출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국제감축사업 투자·구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모델** 설계

② G2G 추진여건 조성

양자협력 체계 확대 및 **표준 협정문안** 마련
개도국 협력 유도를 위해 **양자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병행
국제금융기구(MDB)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 참여를 통한 **양자협력 접점** 확대

③ 사업 활성화 유도

사업 **발굴·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 적극 지원
대내외 사업 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대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

* 참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2022.8, 관계부처 합동)

01 국제감축사업

⑤ 추진 절차 (제6.2조 사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 추진 및 ITMOs 취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무조정실 고시로 제정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23.1.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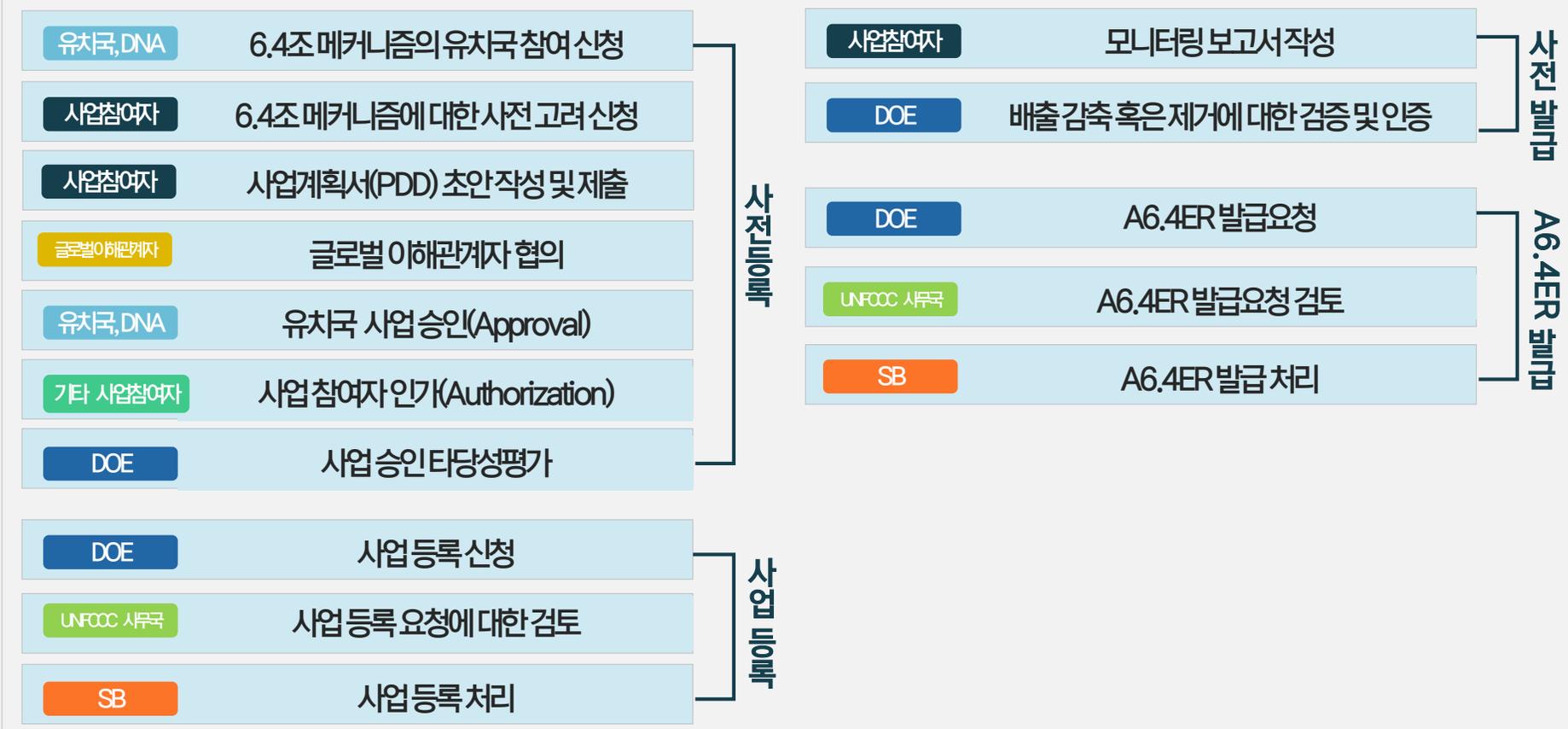


01 국제감축사업

⑤ 추진 절차 (제6.4조 사업)

UNFCCC 제6.4조 감독기구(Supervisory Body)에서 최근 발표한 제6.4조 사업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미확정 상태로 계속 논의 중임

[Article 6.4 mechanism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 (Ver. 03.1) ('23.7.13.)]



01 국제감축사업

⑥ 이슈사항

구분	파리협정제6.2조 사업	파리협정제6.4조 사업
참여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파리협정 당사국 여부 • (필수) NDC 제출 여부 • ITMOs 승인 기반 마련(협약 시 구축) • ITMOs 추적 기반 마련(국제등록부 활용 가능) •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제출 여부(미존재 시 구축 지원 必) • (필수) 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파리협정 당사국 여부 • (필수) NDC 제출 여부 • (필수) 국가승인기구(DNA) 존재 여부 • (필수) 지속가능개발(SD)에 기여함을 입증 • (필수) 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부합성
운영체계 및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감축협약체 수립 국가 부재 ⇒ 사업승인 불가, 방법론, 상응조정 비율 등 미확정, 감축실적 이전 가능성 미지수 • 양자협정 체결(4개국: 베트남, 몽골, 가봉, 우즈벡) ⇒ 감축실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결국 확대 필요 * 가서명국(UAE, 페루, 모로코), 그 외 20여개국과 협정 논의 중 • 국제감축사업 고시를 통해 추진절차 수립 완료 ⇒ 평가방법 등 세부 이행절차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4조 감독기구(SB) 수립 완료 • 추진절차 초안 수립 완료 ⇒ 추진절차 확정 필요 • 방법론 미개발 ⇒ 既 CDM 방법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
감축실적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적응 지원 및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금 분배(SOP):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적응 지원 및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금 분배(SOP): 발행된 A6.4ERs의 5% 공제 • 전 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감축(OMGE) 도모: 발행된 A6.4ERs의 2% 의무 취소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환경건전성 및 투명성 보장, 엄격한 산정 준수, 이중계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상응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C 달성에 사용하도록 인가된 감축 실적(MO)에 상응조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치국이 감축실적을 NDC 달성, 국제 감축목표(국제 항공 및 해운 등), 기타 목적(자발적 시장 활용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했을 시, 해당 A6.4ERs에 대해 상응조정 적용 (최초 이전, SOP 및 OMGE로 취소된 A6.4ERs에 적용)

01 국제감축사업

⑥ 이슈사항

구분	파리협정 제6.4조 사업
<p>CDM → 제6.4조 메커니즘 전환, NDC에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M 사업의 제6.4조 메커니즘 전환 절차는 아래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참여자(Project Participants)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6.4조 사업으로 전환 신청 ②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8일 간)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치국의 사업 전환 승인 결과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 ④ 사업 참여자는 UNFCCC 사무국에 추가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CDM 방법론을 계속 적용할 경우: 전환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유치국의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등록된 CDM PDD 또는 PoA-DD 및 CPA-DD에 대한 부록을 제출 - 사업이 제6.4조 메커니즘 방법론으로 변경할 경우: 유치국의 승인 후 1년 이내에, 수정된 PDD 또는 PoA-DD 및 CPA-DD, DOE의 검증 보고서를 제출 ⑤ 전환 수수료 납부 ⑥ UNFCCC 사무국에 의한 완전성 검토 ⑦ UNFCCC 사무국에 의한 실질적인 검토 ⑧ 감독기구(SB)에 의한 전환 요청 검토(요청 시) ⑨ 감독기구(SB)에 의한 전환 승인 또는 거부 결정 ⑩ 전환 승인 시 CDM에서 등록 해제 • 2021년 이전 발급된 감축실적(CERs)은 아래 조건 충족 시 NDC 달성에 사용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CDM 사업 ② CERs는 2021년 이전의 감축 실적이며, 제6.4조 메커니즘 등록부로 이전 및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③ CERs는 제1차 NDC 달성에만 사용 가능 ④ 유치는국은 CERs에 대해 상응조정 적용이 불필요하며, 수익금 분배(SOP)가 면제됨 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CERs는 추후 CMA 결정에 따라 NDC 달성에 사용 가능 ⑥ 임시 CERs 및 장기 CERs는 NDC에 사용할 수 없음

* Annex to Decision 3/CMA.3, XI.A, XI.B (UNFCCC)

* [FAQs on transitioning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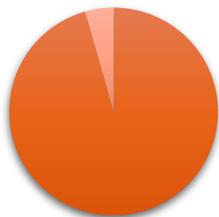
Copyright (C) KRIC. All rights reserved.

01 국제감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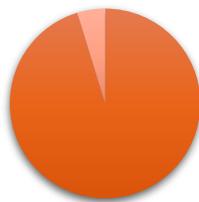
⑦ 제6.2조, 제6.4조 사업 현황

CDM사업 → 제6.4조 메커니즘 전환신청 현황(~'23.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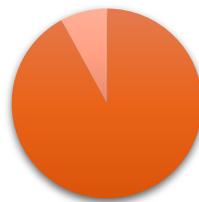
등록된 전체 CDM 사업 건수
(8,206건)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CDM 사업 건수(3,49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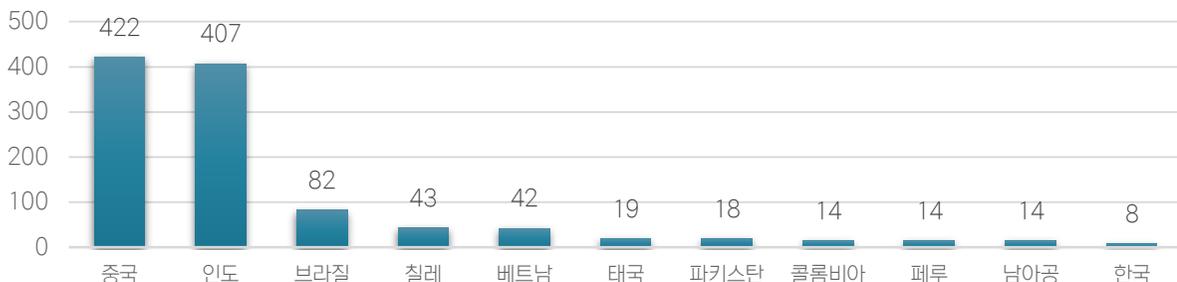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 신청한
CDM 사업 건수(1,284건)



■ PA: 7,845개 ■ PoA: 361개 ■ PA: 3,329개 ■ PoA: 165개 ■ PA: 1,182개 ■ PoA: 102개

국가별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 신청한 CDM 사업 건수 (10 순위 + 한국)



전환 신청 가능한 CDM 사업 중 약 36%만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 신청,
중국과 인도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64% 차지

제6.2조 사업 추진 현황('23.12.6 기준)

- 구매국: 7개국(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 유치국: 42개국(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가나, 페루, 세네갈 등)
- 양자협정 체결 수: 67건
- 제6.2조 시범사업 수: 139건(일본 JCM 116건, 스위스 사업 23건으로 구성)
 - 3건은 스위스 정부의 인가서 발급 및 예비/갱신 초기 보고서 제출 완료

* 스위스-가나(1,126 ktCO₂e) '가나의 지속 가능한 쌀 재배를 위한 기후스마트농업 실행 촉진'

* 스위스-태국(500 ktCO₂e) '방콕 e-버스 프로그램'

* 스위스-바누아투(97 ktCO₂e) '태양광 발전 ITMO 프로그램을 통한 바누아투 유인도의 전력화'

- 우리나라 제6.2조 시범사업 추진 현황
 - 환경부: ('21년) 설치지원 1건, ('22년) 예타 4건, 설치지원 1건, ('23년) 예타 7건, 본타 5건, 설치지원 2건
 - 산업부: ('23년) 설치지원 4건

제6.2조 사업은 스위스와 일본이 선제적 추진 중, 우리나라도 점차 시범사업 확대

02 ODA 사업

① 정의

-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
-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간 또는 개도국 내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 * 국제개발협력 개요 (ODA KOREA 홈페이지)

※ 우리나라 ODA의 조건

- ✓ 공공기관의 원조 →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가 아님
- ✓ OECD 지정 수원국(142개)에 대한 원조 → 타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가 아님
- ✓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님
- ✓ 차관은 소득그룹별 특정 증여율(최빈/저소득국 45%, 하위중소득국 15%, 상위중소득국 10%) 이상 → 특정 증여율 미만인 차관은 ODA가 아님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 출처: KOICA

02 ODA 사업

② 목적



정치 및 외교

미국: 마샬플랜(2차 세계대전 후),
대테러리즘(현재)
프랑스: 구식민지 영향력 유지



인도주의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상업 일본



개도국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개도국과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한국(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③ 법령 및 정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1.25. 제정, 2010.7.26. 발효)

한국의 개발원조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 포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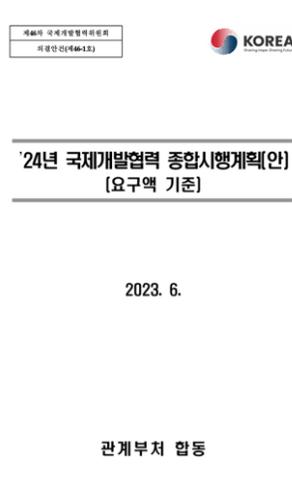
(2010.7.26. 제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사업 평가절차, 통계자료
지침 등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실행을 위한
사항 규정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계획, 5년)

1차: 2011~2015
2차: 2016~2020
3차: 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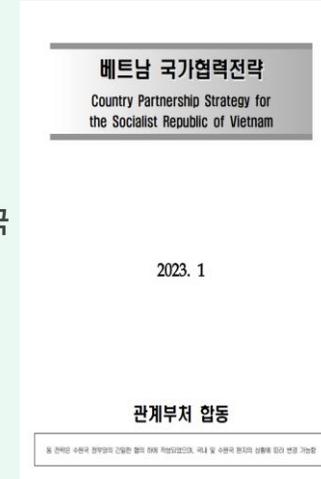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단기계획, 1년) (2006년~현재)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수립

1기: 2011~2015
2기: 2016~2020
3기: 2021~2025



02 ODA 사업

④ 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2016~2030년까지 전세계 빈곤 종식을 위해 설정된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목표이자, 사회-경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MDGs와 차별화



GNI 대비 ODA비율 상향

- UN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목표치는 0.7%
- 우리나라는 GNI 대비 ODA 비율 0.17%('22) ⇒ OECD DAC 회원 30개국 중 28번째 수준
- 우리나라 원조 총액은 27억 8000만 달러('22)
- OECD DAC는 '30년까지 우리나라 GNI 대비 ODA 규모를 0.3%로 확대 권고('18)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의 ODA규모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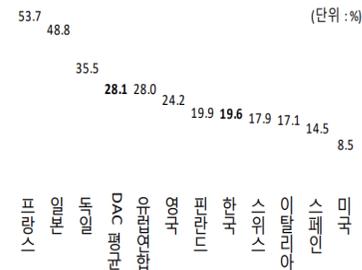
* 아시아경제 뉴스(2023.10.31)

그린 ODA 비중 확대

- 우리나라 그린 ODA 지원 비중 19.6%('15~'19) ⇒ '25년까지 OECD DAC 평균 28.1% 이상(약 1.5배)으로 그린 ODA 비중 확대 목표

* 그린 ODA 범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산림복원, 폐기물 관리, 환경 등

주요국 그린분야 ODA 비중('15~'19평균)



* OECD Statistics, 리우마커 또는 환경마커 부여 사업(약정액 기준)

02 ODA 사업

⑤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아시아

▼ 중점협력국 ▼ 일반협력국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 중점협력국 ▼ 일반협력국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중동·CIS

▼ 중점협력국 ▼ 일반협력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중남미

▼ 중점협력국 ▼ 일반협력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오세아니아·기타

▼ 중점협력국 ▼ 일반협력국

해당 지역에는 중점협력국이 없습니다.

* 출처: ODA KOREA

02 ODA 사업

⑥ 추진 절차 (예시: KOICA 사업)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추진 절차는 N-2년에 사업을 발굴 및 기획하고, N-1년에 선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심의와 수원국과 협의의사록 체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N년도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함

- 절차: 사업발굴(수원국 사업요청서 접수) → 예비조사 → 사업 심사/승인 → 예산 심의/국회 승인 → 기획조사 → 수원국과 협의의사록 체결 → 집행 계획 수립 → 사업 시행자 선정 → 사업 시행 → 모니터링 → 종료평가 → 사업종료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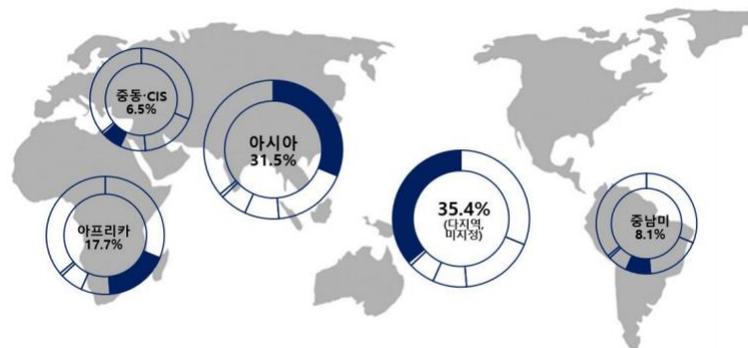
* 출처: KOICA

02 ODA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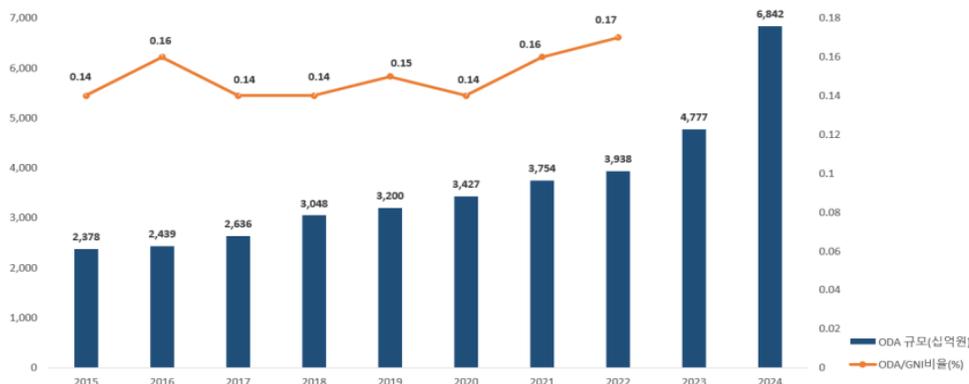
⑦ ODA 사업 현황

'22년 우리나라 ODA 사업 현황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3.6 발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요구액)
총ODA(십억원)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842.1
양자간원조 비중(%)	2,387.7 (78.3)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651.1 (82.6)
유상원조 비중(%)	1,058.1 (44.3)	1,141.2 (45.8)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72.1 (36.7)
무상원조 비중(%)	1,329.6 (55.7)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579.0 (63.3)
다자간원조 비중(%)	660.5 (21.7)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91.0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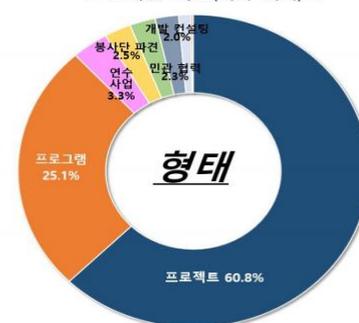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7%(유상 85.4%, 무상 71.1%) 지원(다국가 사업 제외)



<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



< 형태별 비중(기타 제외) >



'22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3조 938억원(양자 79.1%:다자 20.9%, 무상 60.5%: 유상 39.5%),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분야는 인도적 지원, 교통 중심 지원(환경보호 3.3%로 미비), 사업 유형은 프로젝트가 60%로 다수

03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 가능성 및 유의사항

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CDM 사업의 ODA 자원 활용의 적격성 논의 결과

For Official Use DAC/CHAIR(2004)/FINAL 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0-Apr-2004 English - Or. English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fice of the DAC ODA E... MECH... PROPOS... This document was ENDORSED at the DAC High Level Meeting on 15-16 April 2004 under item 3: "ODA Eligibility of Expenditure..." Contact person: Mr. Remi Paris (Tel: +33 1 45 24 17 46; remy.paris@oecd.org) Mr. Brian Hammond (Tel: + 33 1 45 24 90 34; brian.hammond@oecd.org; Mr. Paul Isenman (Tel: + 33 1 45 24 94 70; paul.isenman@oecd.org) JT00163246 Document complet disponible sur OLIS dans son format d'origine Complete document available on OLIS in its original format	DAC/CHAIR(2004)/FINAL English - Or. English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fice of the DAC ODA E... MECH... PROPOS... This document was ENDORSED at the DAC High Level Meeting on 15-16 April 2004 under item 3: "ODA Eligibility of Expenditure..." Contact person: Mr. Remi Paris (Tel: +33 1 45 24 17 46; remy.paris@oecd.org) Mr. Brian Hammond (Tel: + 33 1 45 24 90 34; brian.hammond@oecd.org; Mr. Paul Isenman (Tel: + 33 1 45 24 94 70; paul.isenman@oecd.org) JT00163246 Document complet disponible sur OLIS dans son format d'origine Complete document available on OLIS in its original format
---	---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ODA 지출에 대한 적격성 문제

1. CDM 사업 수행시 ODA를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CERs의 가치 만큼을 ODA 가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

- ✓ ODA 지출에서 공여국에게 돌아가는 수익(대출금 상환, 미사용 보조금에 대한 회수, 지분 매각대금을 포함)을 제외한 공여국 노력의 순액을 측정
- ✓ ODA 자금 지원의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CERs은 공여국에 반환 및 공여국의 수익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ODA 흐름에서 공제
- ✓ 만일 공여국이 CERs을 받지 않기로 수원국과 합의하였거나, 프로젝트가 CERs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할 필요 없음
- ✓ ODA 자금 지원의 CDM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CERs의 가치에 대응하는 만큼을 ODA 등가액에서 공제
- ✓ ODA 자금은 CERs 구매를 위해 사용될 수 없음

2. 마라케시 합의문 결정사항으로서, 부속서 I (Annex I) 국가의 CDM에 활용하는 공적 자금은 ODA의 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부속서 I의 재정적 의무로부터 분리되어 계산되지 않아야 함

03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 가능성 및 유의사항

② 파리협정 제6.2조, 제6.4조 사업의 ODA 자원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파리협정 제6.2조 사업

- ✓ 파리협정(2015), 제 6.1조 ~ 제6.3조 검토
⇒ ITMOs 확보 관련 자금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 CMA3(2021), 제6.2조 결정문 검토
⇒ ITMOs 확보 관련 자금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DA 자금 지원을 통한 ITMOs 확보에 대한 제한사항
미발견 → ODA 자금을 활용한 제6.2조 기반의 감축활동 및
실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파리협정 제6.4조 사업

- ✓ 파리협정(2015), 제 6.4조 검토
⇒ ITMOs 확보 관련 자금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 CMA3(2021), 제6.4조 결정문 검토
⇒ ITMOs 확보 관련 자금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DA 자금 지원을 통한 ITMOs 확보에 대한 제한사항
미발견 → ODA 자금을 활용한 제6.4조 기반의 감축활동 및
실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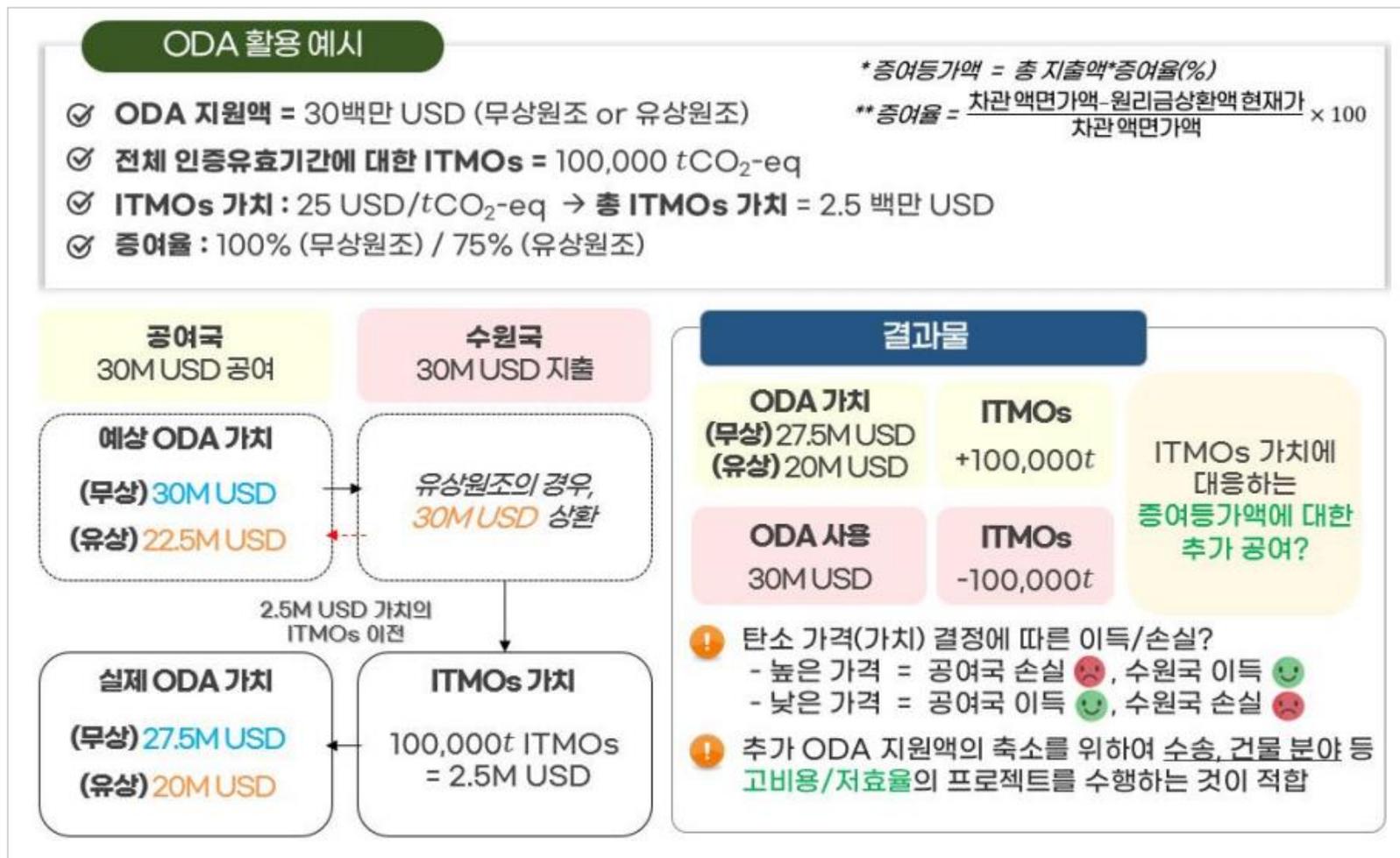
CDM project standard for project activities (제38조)

- ✓ 향후 제 6.4조 사업은 CDM의 세부 규칙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DM 사업 운영표준(2021)을 검토
- ✓ 사업 참여자는 제안된 CDM 사업 활동을 위한 공적 재원의 출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만약 부속서 I(Annex I) 국가로부터의 공적 재원이 포함된 경우, 사업 참여자는 해당 부속서 I 국가로부터 그들의 자금 공여가 ODA의 전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협약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의무와 분리되어 있음을 확약하여 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 ✓ 우리나라는 UNFCCC 비부속서 I(Non-Annex I) 국가이기에 공적 재원을 활용한 CDM 사업에 제한 사항이 없으나, 만일 향후 국가 지위가 삭제될 경우 ODA 전용 및 재정 의무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CDM 사업에 공적재원 포함 시 → 사업참여자는 부속서 I
국가로부터 해당 자금 공여가 ODA 전용을 초래하지 않고,
재정 의무와 분리됨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 제출 필요

03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 가능성 및 유의사항

③ 국제감축사업에 ODA 자원 활용 시 ODA 가치 산정방법 (예시)



03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 가능성 및 유의사항

④ 캐나다 정부, ODA 또는 기후재원을 활용하여 ITMOs 확보 불허 주장

Submission by Canada on Article 6 and adaptation finance

Canada is pleased to present its views on financing for adaptation and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n furtherance to the request from the SBSTA Chair. The submission below discusses the share of proceeds (Article 6.4) and cooperative approaches involving the use of ITMOs (Article 6.2) in tandem.

Share of proceeds for adaptation (Article 6.4)

Article 6.6 of the Paris Agreement provides that the CMA shall apply a share of proceeds (SoP) to the new Article 6.4 mechanism, in order to cover administrative expenses and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 meet the costs of adaptation. Paragraph 37(f) of Decision 1/CP.21 further mandates that the CMA establish rules, mechanisms and approaches on the basis of experience gained with the in-kind (2012) mechanism on the basis of experience gained with the in-kind (2012) mechanism and approaches adopted under the Convention.

The 2nd and 3rd versions of the Madrid texts propose to operationalize the SOP for adaptation as in-kind transfer of emissions units (2021) of issuance. This proposal is quite similar to the approach used for the in-kind (2012)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While the in-kind (2012) mechanism was successful after 2013 due to persistently low prices and issuance rates in the CDM, Canada encourages Parties to apply lessons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to the RMPs of the new mechanism, as per their mandate from COP21.

While some Parties may be anticipating higher unit prices and volumes in the new mechanism, we note that prices and trade volumes in most carbon markets do normally fluctuate over time. So while Canada can accept continuing the previous approach, should there be interest among recipient countries, we would also be open to discussing further improvements to ensure that the new mechanism consistently delivers a significant adaptation funding through its SoP, including in the context of different supply, demand and price scenarios that are typical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Financing for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6.2

Article 6.6 states clearly that the SoP (above) is applied to the Article 6.4 mechanism, and not to other cooperative approaches under Article 6.2. At COP21, Parties considered the option of applying a share of proceeds more broadly but did not agree to do so. The precise wording of Article 6.6 reflects this agreement, namely that CMA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duties on trade flows between sovereign states. This understanding is also consistent with Canada's national approach to pricing carbon pollution, in that all direct proceeds from federal carbon pricing instruments must be returned to the jurisdiction of origin.

1 of 2

캐나다 정부의 제6조 사업 및 적응 재원에 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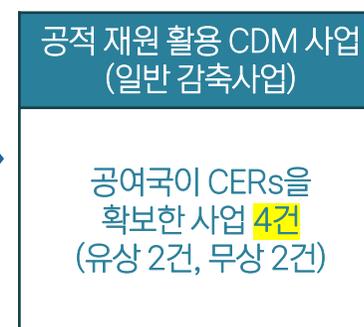
- ☑ 캐나다는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 실현(NDC 달성 또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ODA 또는 기후재원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힘
- ☑ ITMOs를 위해 유치국에 제공한 금액은 기후재원으로 보고될 수 없음
- ☑ 기후재원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감축 실적은 ITMOs로서 제3국에 재판매 될 수 없음

캐나다는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수행 시, ODA 또는 기후재원을 활용하여 ITMOs를 확보하는 것을 불허함 → 우리나라 국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ODA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외타 국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국제 협상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

04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방안

① ODA 재원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 직접 수행 방안

구분	전체 CDM 사업 건수	공적 자원 활용 CDM 사업 건수	비중 (%)
일반 감축사업	7,844	83	1.1
프로그램 감축사업	361	23	6.4
단위 감축사업	2,822	135	4.8
합계	11,027	241	2.2



(CDM사업 수행예시)

- 사업명: Zafarana Wind Power Plant Project(이집트 차파르나 풍력발전소)
- 사업 참여자: (일본) JICA, Japan Carbon Finance, Ltd.(JCF), (이집트)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NREA)
- 적용방법론: ACM0002
- 인증 유효기간: 2008~2015년
- 총 감축량: 1,145,581.95톤
- 특징
 -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가 이집트 정부 NREA에 유상차관 제공
 - '공적 자금에 관한 정보' 협약서 제출
 - 일본 민간기업 JCF가 CERs 구매

유의사항

우리나라에서 ODA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 ! ITMOs 발생분만큼 ODA 등가액에서 공제 必
- ! 사업참여자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자금 공여가 ODA 전용을 초래하지 않고, 재정 의무와 분리됨'에 대한 협약서를 확보하여 제출 필요

04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방안

② ODA 재원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 연계 방안

은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22)

② 개도국 협력 유도를 위해 양자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

- 우선 협력대상국의 협력 유도를 위해 ODA 등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부처별 ODA** 간에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
 - * (예) 본사업 : 몽골 울란바토르시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
 ODA :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 }연계
 - ** 산업부(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환경부(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산림청(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기재부(기후변화 관련 KSP) 등
- ODA 사업 간의 연계 협의 촉진을 위해 사업 발굴·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정보를 적극 공유

사업 추진 단계별 ODA 연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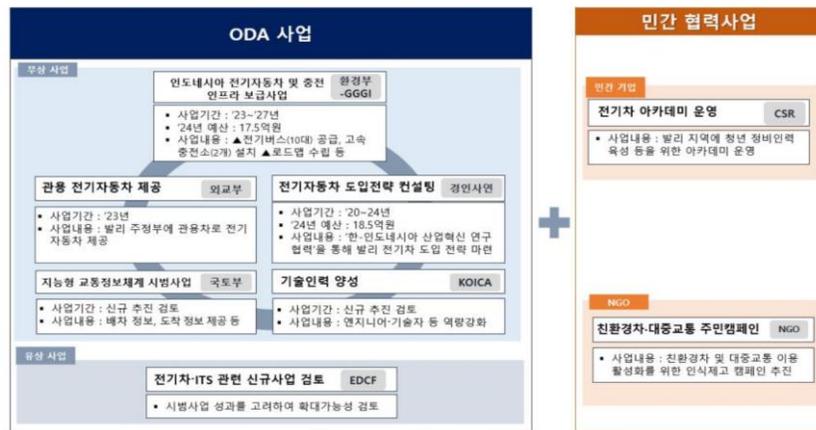
단계별 과제	사전 준비	투자	운영
	· 양자협정 체결	· 사업 승인·투자	· 실적 확보·이전
↓(연계)			
O D A	정책 지원 ^{주1}	본사업 연계 지원 (예 : 감축량 산정 지원)	후속 지원 (예 : 인력양성 지원)
	인프라 지원 ^{주2}	실증 R&D (예 : 본사업 타당성 검증)	본사업 연계 인프라 구축 (예 : 친환경 발전소-도심 간 송배전망 구축)
	직접투자	국제기구 다자펀드에 EDCF 출자 검토	

주1) 양자 ODA, 국제기구 신탁기금 활용 / 주2) 양자 ODA, EDCF 활용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3)

- 개도국과 기후협약 체결* 등을 통해 우리 은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국제감축사업을 ODA를 활용해 측면 지원**
 - * 협정 既체결(베트남, 몽골, 가봉), 우선 협력 대상국(23개국) 추가 협정체결 추진중(23.5)
 - ** (예) 탄소시장 구축 컨설팅,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규제설계,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등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 ① 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 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 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 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시

□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패키지



ODA는 협력대상국의 제6조 사업 및 ITMOs 관련 기반(인프라, 제도, 인적역량) 마련을 위해 활용

04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방안

③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역량강화, 기술지원 활동 (예시)

구분	주요 내용
독일 Climate Finance Innov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정부(BMZ-GIZ)의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일환 UNFCCC 시장 메커니즘과 금융기관의 혁신적 연계 방식 구축 협력국(Ethiopia, Senegal and Uganda)의 Mitigation Activity Design Documents 작성역량 강화 및 감축활동 확대 보고서 발간(West African Alliance on Carbon Markets and Climate Finance)
ADB Article 6 Support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개도국의 탄소시장 준비, 감축수단 식별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역량강화, 정책 개발 지원 재원 출처: ADB 기술지원신탁기금, 독일 환경부(BMU), 스웨덴에너지기구
세계은행 Mitigation Action Assessment International Transfer Readiness Mod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성, 이중계상 방지, NDC에 포함되는 감축활동, 환경건전성 항목별 주요 지표를 수립, 협력국의 ITMOs readiness를 점검하는 모듈 개발
UNDP NDC Support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의 ITMOs 참여 준비사항 지원, 7대 주제별 기술지원 스위스-가나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역할
GGGI Mobilizing Article 6 Trading Structur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에 따라 실적 거래가 가능한 감축활동을 규명하고 필요한 양식(예: MOPA Template) 개발 호스트국 역량강화 지원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05 시사점

- ✓ ODA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감축사업 수행이 가능함
 → 단, 캐나다처럼 ODA 또는 기후재원을 활용한 ITMOs 확보를 불허하는 국가 존재, 관련 국제협상 예의 주시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 ODA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 1) ITMOs 발생분만큼 ODA 등가액에서 공제 必
 - 2) 사업참여자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자금 공여가 ODA 전용을 초래하지 않고, 재정 의무와 분리됨’에 대한 **확약서 확보**
- ✓ OECD DAC에 ITMOs 발생분만큼 공제한 ODA 등가액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방법 등은 아직 DAC에서 논의 중
- ✓ ODA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제6조 사업 및 ITMOs 관련 기반(인프라, 제도, 인적역량) 구축을 위해 국제감축사업과 연계 가능하므로, 관련 사업 발굴 및 확대 필요

참고문헌

- UNFCCC(2023.7.13), Article 6.4 mechanism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 (Ver. 03.1)
- UNFCCC(2021), 2/CMA.3 “Guidance on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 UNFCCC(2021), 3/CMA.3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 OECD DAC(2004), ODA Eligibility Issues For Expenditures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Canada Government(2021), Submission by Canada on Article 6 and adaptation finance
- UNFCCC(2021), CDM project standard for project activitie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 한국수출입은행(2023), 「탄소배출권 사업연계를 위한 EDCF 활용방안」 최종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2023.6),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요구액 기준)
- 관계부처 합동(2023.4),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2.8.19),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 관계부처 합동(2021.7.7),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국무조정실 고시(2023),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2023.11.14), “한국환경공단, 26개 기업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9.25), “베트남·우즈베크와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 아시아경제 뉴스(2023.10.31), “[K원조 추적기] 어정쩡한 韓 원조, 국익·인도주의 사이 우선순위 불분명”
- UNFCCC 홈페이지, FAQs on transitioning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mechanism (검색일: 2024.1.4)
- KOICA 홈페이지 (검색일: 2023.1.2)
- ODA KOREA 홈페이지 (검색일: 2023.1.2)

